

	A	
	41	1

5

特殊教育에 관한 公聽會

1993. 11. 25.

國會教育委員會

LRE

12709-0283002

국립-
강원사.

차량방 자료

2

特殊教育에 관한 公聽會

1993. 11. 25.

國會教育委員會

사학재단기독교교회 유예기간을 유고 시키는 것 후명 추가.

근사분리: 수습분리는 증분.

5000억원: 모든 장의사들이 8인인 4인명.

5000명 :
3200명

次
目 次
0523
55-0411

반동기독교교회
의식기록라
연구사
감

- 1. 名 稱 ----- 1
- 2. 目 的 ----- 1
- 3. 日 時 및 場 所 ----- 1
- 4. 陳 述 人 ----- 1
- 5. 進 行 順 序 ----- 2
- 6. 議 席 表 ----- 3
- 7. 陳 述 人 的 陳 述 內 容 (陳 述 順 序 에 의 함) ----- 5
 - 가. 김 영 환 ----- 7
 - 나. 윤 점 롱 ----- 21
 - 다. 이 영 자 ----- 31
 - 라. 이 남 진 ----- 39
 - 마. 김 승 국 ----- 53
 - 바. 서 광 응 ----- 63

기독교교회
의식기록
299억원

기독교교회: 원차적으로 증분.
재정분리, 근사분리.

기독교교회 대상의 차이
28억이나 국가 100억여.
28억여동

299억원 : 시현이동.

정식(근사분리) (91) 341-1741

정식지체아동 8인 4인명
3-5인
6이하 이하 2인 (15%) 1인 3인명

정식지체. 자폐아.
시각. 청각. 지체.

기독교교회
(이제는 학교에 특수유치원 비정
공공기관
주요사항 불지연)

1. 名 稱

特殊教育에 관한 公聽會

2. 目 的

최근 그 重要성과 關心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特殊教育에 대한 意見을 폭넓게 파악하여 當委員會의 關係法案 審議時 적극 活用·反映하고자 함.

3. 日時 및 場所

가. 日 時

1993. 11. 25(木) 10:00(1日間)

나. 場 所

國會教育委員會 會議室(國會議事堂 409號室)

4. 陳述人

신민학교 222.

1) 김 영 환 : 특수교육협회 회장

✓ 2) 윤 점 룡 : 전주우석대학교 교수

✓ 3) 이 영 자 :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장

✓ 4) 이 남 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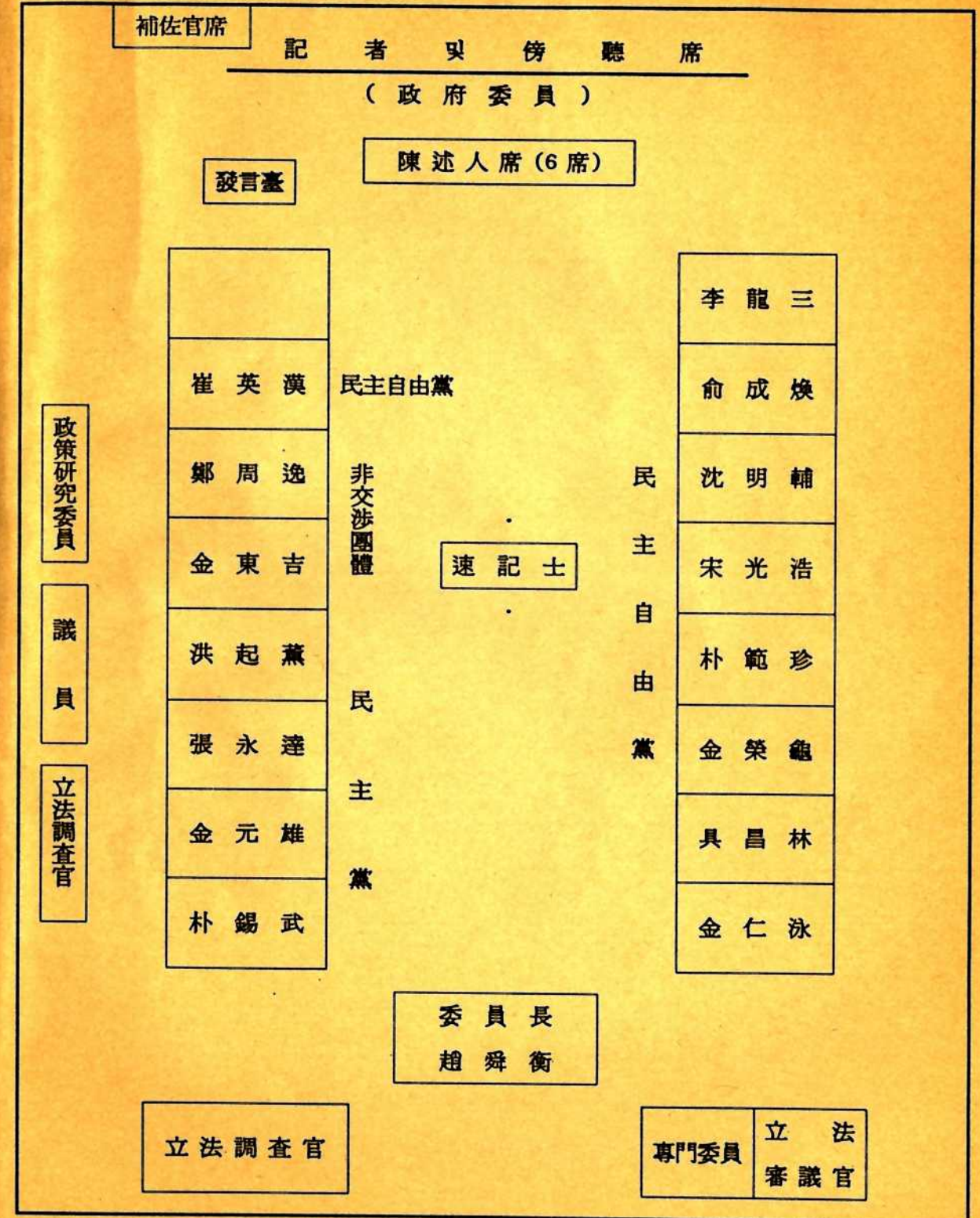
5) 김 승 국 : 단국대학교 교수

6) 서 광 응 : 장애인부모회부회장

5. 進行順序

日 時	內 容	備 考
10:00	開 會	
10:00 - 10:05	委員長 人事 및 陳述人 紹介	
10:05 - 12:05	陳述人 發表(6人)	
12:05	停 會	
12:05 - 13:30	午 餐	
13:30 - 15:30	質疑 및 答辯	
15:30 - 16:00	停 會	
16:00 - 18:00	質疑 및 答辯	
18:00	散 會	

6. 議 席 表



7. 陳述人の 陳述内容 (陳述順序에 의함)

(按) 内部印刷 内部印刷 内部印刷

특수교육협회 회장

김영환

특정 장애유도수준

특정 장애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은 복지국가의 실현에 있다. 이러한 이상의 기초가 되는 민주주의 사상은 인간을 사회공리적 입장 즉, 인간의 효용성 차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심신장애자와 관련된 정책은 장애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된 장애자들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 의료적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교육효과 측면에서는 조기에 특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극복시키거나 크게 완화시킬 수 있고, 교육비용효과 측면에서도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시하지 않는 것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며, 그 시기가 늦어질 수록 이들에 대한 교육비와 복지비의 부담이 커지므로 특수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선진제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완전취학, 조기교육의 강화, 통합교육의 확대, 증등이후의 직업진로 등에 관한 교육 및 직업재활제도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동향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을 조명해 보면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과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이라고 함)을 비교하여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아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1. 특수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우리의 문제점

가. 완전취학 기회의 보장

특수교육의 세계적 추세는 모든 장애자에게 완전취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상의 공교육이란 장애자의 취학전교육(조기교육), 초·중등교육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감독, 지시 및 책임하에 장애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75년 제정된 P.L.94-142(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초·중등 교육단계에서의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1984년 P.L.98-199에서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및 중등교육 단계 이후의 교육기회 확충을 위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종전의 연방정부 보조금의 사용한계를 『3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하였으나, 새법에서는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의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등교육 단계 이후의 교육기회 확충을 위하여는 직업교육, 기술교육, 계속교육 또는 성인교육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948년에 시·청각장애자에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의무취학을 실시했고, 1979년에는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병·허약아에게도 무상의무취학(초등 - 중학)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1978년까지 무상의무취학을 위해서 100개의 국·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였다.

영국은 1971년 4월 1일부터 5세에서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전원취학 시키고 있으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세부터 5세 이전의 취학전 교육대상자가 보육학급이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면 정상아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교육진흥법(교육법전, 1993) 5조에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세부터 17세까지(유치원 - 고등학교)의 장애학생과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출 현 율	대상자(5-17세)	취학생수	특수교육수혜비율
중도장애	대상아동의 0.46%	43,380명	20,985명	48%
경도장애	대상아동의 1.98%	186,720명	20,210명	15%
계	2.44%	230,100명	49,195명	21%

<자료 : 한국교육 개발원>

이상에서와 같이 5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21%만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대책도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3세까지 낮추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나. 조기교육의 강화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린 나이에 학습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크고 오래 지속된다. 유아기는 발달의 가소성이 큰 특징이 있다. 즉, 이는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기에는 특정 능력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적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교육효과가 크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적기에 실시하는 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교육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조기교육을 실시하면 장애를 극복내지 완화시켜 이들의 조기통합교육이 가능하고, 이러한 숫자가 많을 수록 후기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비 절감은 물론 다수의 장애자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확대일로에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0세부터 3세까지의 유아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P.L.98-199), 영국은 1978년 5월에 "특별한 교육적 요구"라는 제목의 Warnock 보고서에서 조기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재원이 확보될때까지는 2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유아를 정상유아보다 우선하여 보육학급이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유치원에 만6세에 취학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애유아는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어 90%의 유아가 사회성에서 관할하는 탁아소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스웨덴은 4세부터 주정부의 책임하에 장애유아를 확인하고, 확인된 장애유아는 취학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 11월 정령 제339호에 "학교 교육법중 양호학교에 있어서 취학의무 내지 양호학교(특수학교)의 설치의무에 관한 부분적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의 공포로 1979년 4월 1일부터 초.중학교 의무교육제 실시와 더불어 장애유아의 조기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유아에 대해서만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독립된 특수교육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다. 1993년 3월 현재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118개 특수학급에는 대부분 5세인 장애유아 약 900명만이 취학하고 있다. 5세 장애유아의 수를 15,300명('93학년도 취학대상자 630,000명의 2.44%)을 장애유아로 추정한다면 조기특수교육대상자의 5%만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도시 등지에서 특수교육, 치료교육, 요육, 조기교육 등

추정액 = 280000 * 15.3 / 12 = 45.900 (244기 5호)

의 명분하에 운영되는 192개 (조기교육연합회, '94. 4) 사설 무인가 학원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수강하고 있는 장애유아가 4,3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같이 3세부터 조기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재 3세, 4세, 5세 장애유아의 수가 45,90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1993년 3월 현재 2%만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나머지 장애유아들에게도 조기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다. 통합교육의 확대

선진국의 경우는 장애인의 교육은 정상인과 더불어 수행되는 동시에, 그의 능력이 가장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교육대책을 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교육법에서는 제한적 환경의 극소화(least restrictive enviro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전체적 환경은 남녀노소, 가진자와 못가진자,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등, 조건을 달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학생들만의 교육집단이나 우수한 학생들만의 교육집단은 전체적 인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한 장애인도 정상인들의 사회와 분리하는 것을 금하고 모든 가족이 협력하여 살아가는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 환경으로는 완전히 제한된 교육환경(특수학교 등)과 약간 제한된 교육환경(특수학급 혹은 특별지도실)이 있다. 그 중 제한된 교육환경을 극소화하여 개인 학생의 욕구, 학부모의 요구, 교육적 조건, 사회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학생을 제한이 적은 교육환경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통합교육이다.

미국 등 구미 선진 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제한된 교육환경인 특수학교를 900여개 설치하였다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려는 시점에서 걸림돌이 되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는 이미 제한된 교육환경을 거의 철폐하여 통합교육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의무교육이니 무상교육이니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이에 대비한 법적인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합교육 실시에 대비한 법적인 규정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라. 중등 후기 교육제도의 확충

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의 최종 단계는 직업진로 교육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독립인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인간다운 삶, 자아의 실현,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은 경제적 독립이 보장될 때 균형있는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고도화된 기술 수준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후에 사회로 진출하여 직업생활에 적응하기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는 21세까지를 교육연한으로 규정하여 고등부 졸업후에 직업교육, 경쟁고용, 계속교육 또는 성인생활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행기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4년제 청각장애인 국립대학을 1교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수용할 수 없는 중도장애자의 직업훈련은 직업재활법에 지원고용제도를 규정하여 학교와 산업체가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본은 유.초.중.고등부를 졸업한 후에 맹.농학교의 경우 1-3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기술 전문학교(전국 19개교)가 있고, 정신지체학교 등의 경우는 1년과정의 전문학교(전국 1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학교 전공과정은 법적인 규정없이 특수학교에서 임의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법 제 143조에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2. 개정안 및 기본법안의 분석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의 방향은 완전 취학기회의 보장, 조기교육의 강화, 통합교육의 확대, 중등후기 교육제도의 신설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된 개정안과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완전 취학기회의 보장

1) 무상교육 대 무상의무교육

장애자들의 완전 취학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기본법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 정 안	기 본 법 안
<p>제6조 (무상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p> <p>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 (권리 및 의무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만3세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p> <p>② 국가와 모든 국민은 특수교육대상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p> <p>제6조 (무상교육)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육법 제143조에 의한 전공과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p>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전공과)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겠다(교육법 제96조와 제10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음)고 했고, 기본법안은 3세부터 중학교까지는 무상의무교육으로, 전공과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두 법안의 차이를 보면,

첫째, 개정안은 초.중등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전공과)은 무상교육을 하는 반면, 기본법안은 유치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까지를 무상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는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무상교육대상자 중 기본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제외시키고 있다.

나. 조기교육의 강화

개정안 제6조와 기본법안 제5조에 의하면 유치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규정했고, 기본법안은 3세부터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으나, 두 법 모두 3세부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148조와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3세부터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유치원이라고 한 것도 "3세부터"라고 한 규정과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

다만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이냐, 무상의무교육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이다.

개정안에서는 무상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교육의 기회확대, 사설 특수유아원의 양성화로 교육의 질적 및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설비 및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막대하여 당장 시행함으로써 파생될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커다란 데 관련이다. 개정안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특수교육 중·장기 교육계획 참조)하여 현실성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감안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아직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첫째, 일반교육과의 형평성

둘째, 교육재정 확보의 가능성

셋째, 시설·설비의 확보 가능성

넷째,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

일반유아 교육은 현재까지 수혜자 부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히 일반국민들의 의식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조기특수교육대상자를 49,500명으로 추정할 때 그 교육비는 5,300억 정도 소요된다. 이는 교육

부 전체 세출예산액의 5.4% (93년도기준 - 98,314억 : 5,300억), 특수교육 관련 교육비의 623% (93년도 기준 - 850억 : 5,300억)에 해당되므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기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양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지도할 전문교사의 수는 약 5,000여명이 필요하나, 현재 특수교육 양성대학에서는 연간 300명만(유치원 담당교사 양성기관 전무)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규정은 사문화되고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3세부터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를 보완해야 하며 상당한 기간(5년 이상)의 경과조치를 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 통합교육의 확대

통합교육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 정 안	기 본 법 안
<p>제13조 (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p>	<p>제7조 (통합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로 개별화교육 또는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p> <p>②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적절한 방침을 세워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p>

두 법안 모두 통합교육 규정은 두고 있으나, 그 실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법의 개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준비로는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학습지도 방법의 습득, 일반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의 확보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보호자나 특수학교의 장이 일반학교장에게 통합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와 통합교육에 필요한 편의 시설등을 갖추 수 있게하고 있다. 기본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부득이한 경우 개별화교육, 분리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하고 있다. 두 법안의 그 정신으로 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본법안의 개별화교육의 내용은 교육방법상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라. 중등이후의 교육제도의 확충

중등 후기 교육제도가 볼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 정 안	기 본 법 안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고등학교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의 설치, 경영자는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류별로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 (직업교육) ① 고등학교 이상의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의 전공과는 교육법 제143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성격과 연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으나, 기본법안은 연한과 설치목적에 없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고등부 졸업후의 교육제도를 두겠다는 규정은 찬성한다.

그러나 차후로는 외국의 예와 같이 전문대학 내지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면 한다.

마. 기타 문제

1) 법체제 문제

기본법안에서는 판별위원회를 비롯해서 시행령에 명시할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법안체제상 문제가 된다.

2) 장애의 명칭

기본법 제3조 3에서 [정신장애]라고 명시하였다. 이 용어가 정신지체교육 대상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정신지체는 진행성 정신질환과는 구분된다. 만약, 개정안 제3조(특수교육 대상자)에 제시된 정신지체를 정신장애로 간주한다면 용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3.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의 방향

특수교육진흥법개정의 방향을 완전취학, 조기교육의 강화, 통합교육의 확대, 중등후기 교육제도의 신설 등을 고려하여 살펴 보았다.

개정안과 기본 법안 모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고는 있다.

기본법안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연차적인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1년까지 9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33개교 신설, 특수학급 3,350학급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착실히 수행된다고 본다면 무리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문화된 법의 규정보다도 법 집행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집행의 현실성을 고려한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법안간의 실무율적인 접근자세를 지양하고 현실적인 안목에서 조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될 것이다.

전주우석대학교 교수

윤 점 룡

수도 特別學務委員會

공 報

政府가 지난 9월에 제출한 「特殊教育 振興法 改正法律案」을 16년 전에 제정한 「특수교육진흥법」과 비교해 볼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改正法律案 主要骨子 아홉가지를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제출된 改正案에는 크게 두가지 내용이 補完된 셈이다. 첫째가 巡廻教育和 派遣教育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반학교의 長이 統合教育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마저도 任意規定(---할 수 있다)으로 하거나 但書(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豫算의 범위 안에서)가 붙어 있다.

그리고, 政府案에는 特殊教育의 최우선 과제인 '義務教育'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물론 教育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어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나 98條에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障礙兒童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教育의 權利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동안 장애아를 진단·평가하고 취학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特殊教育機關長이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國民學校 再修生'을 양산해온 진단·평가 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모든 조항을 教育部令으로 돌려놓아

法案에서 規定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그동안 무수히 지적되어 온 병폐가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政府案은 제10조에서 私立特殊教育機關의 보조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14조에 個別化 教育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할 意志가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改正法律案은 福祉·正義社會를 추구하는 文民政府의 특수교육법으로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침체되어 있던 七十年代에 特殊教育을 '振興'시키기 위해 制定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은 振興法으로서 그 時代에 맞는 역할을 다 했으므로 이제는 2千年代의 先進 特殊教育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한 次元 높은, 新韓國 創造의 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법을 制定해야 할 것이다.

特殊教育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理念은 統合教育의 原理이다.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아동과 같은 教育 場面에 배치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制限된 環境(분리교육)을 最小化시켜야 한다는 LRE정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 24 -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한 障礙兒童이 일반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한 學校 內에서 같은 校門을 사용하는 것도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目的은 장애아동의 社會化 過程을 보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이루고, 一般兒童으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統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障礙兒가 一般兒에게 접근해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의미의 統合教育은 교육을 통하여 障礙兒가 一般兒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一般兒 역시 障礙兒를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을 할 때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통합교육은 그러한 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協力해서 공존하는 社會를 이룩하는데 궁극적인 目的이 있다.

이러한 統合教育의 原理는 法 制定의 基本精神으로 전반적인 내용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政府의 案을 보면, 「제2조(용어의 정의) 6항 "통합교육"이라 함은 장애 학생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서 통합교육의 의미를 狹義의 概念으로 해석하여 그 意味를 축소시키고 있다.

本 陳述者는 이번 특수교육법 改正(또는 制定)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義務教育과 判別委員會에 關係 重點的으로 陳述하고자 한다.

첫째, 特殊教育을 必要로 하는 아동들의 幼稚園 教育은 반드시 義務교육이 되어야 한다. 幼稚園 課程에 就學하는 障礙兒童의 義務교육 效果에 대하여 簡略하게 進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장애 아동을 早期에 發見하여 적절한 教育的 措置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教育적 效果를 확보할 수 있음.

◀조기 教育을 받은 아동의 30%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함(비손조기교육원, 1993)

◀自閉性 兒童의 40~50%가 일반학급에 통합되고 訓練可能 精神遲滯兒는 教育가능 정신지체 수준으로 向上됨.(Marozass & May, 1988)

②장애아동들이 초기 教育의 의무화로 능력이 향상되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하므로써 國家가 특수교육에 드는 費用을 輕減할 수 있음.

③국민으로서 教育의 平等性 確保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100m 달리기를 할 경우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치 않으며 함께 결승점을 밟을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에 맞게 출발선을 달리게 하는 것이 올바른 平等임.

④가족들이 장애아를 家族 構成員으로서 公正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義務教育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은 이러한 가족들의 肯定的인 態度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체의 태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침.

⑤장애아동이 장차 學齡期에 접어들어 계속 특수학교와 같은 분리된 教育기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줄여 줌으로써 統合教育의 早期 實現을 可能케 함.

⑥모든 장애 아동이 초기 教育을 받으므로써 2차적 장애를 豫防하거나 2차 장애의 發見을 도울 수 있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애아동 早期教育의 重要性은 인식하면서 國家 財政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상 장애 유아들이 많지 않고 既存 施設(유치원, 종합복지관, 사설 조기교육원)을 잘 활용하면 큰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年次的으로 擴大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학교·중학교 과정의 義務교육은 教育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強調하는 의미에서 「特殊教育振興法」에 이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違法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教育법 제98조는 惡用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統合教育의 理念을 실현하고 義務教育을 실천하기 위해 特殊教育 '判別委員會(또는 查正 委員會)'는 반드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판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얻어지는 效果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특수학교를 지원하여 탈락하는 일이 없어져 장애아동의 完全就學(Zero-Reject)이 가능해짐.

◀ 현재는 특수학교에서 가벼운 장애아동 중심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허다함.

◀ 특수학교마다 特別基準이 모호하며 선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잡음이 있음.

② 판별위원회의 公評한 評價에 의해 적절한 교육적 배치를 받을 수 있고, 통합교육 정신에 입각한 特殊教育의 機會를 確保할 수 있음.

◀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영역이 다른 학생이 취학하고 있음.

◀ 일반학교에 통합되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아동도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가 있음.

③ 시설이 비교적 잘 된 國·公立 特殊學校는 지원자가 몰리고 일부 사립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하시켜 障礙兒童 入學의 需給을 圓滑하게 함(단, 사립학교도 國·公립 수준으로 지원해야 함).

④ 학교를 졸업한 후의 進路指導까지 알선해 주므로써 장애아동의 職業教

育에 기여 하고 產學協同體制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음.

⑤ 특수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도움을 주는 中樞的인 役割을 하는 행정기구로 성장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판별위원회가 각 市·郡(區)教育廳내에 설치되면 많은 專門人力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단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市、郡(구) 교육청에 있는 特殊教育 專擔 獎學士를 중심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그 외 각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남지회장

이 영 자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 10 조

교육법을 개정하시는 모든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부모로써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식을 대신한 부모의 권리를 외면 하시지 않은 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자식들은 전염병 환자도 아니며 또한 시한부 인생도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법을 개정하시는 모든분께 사례 발표로 아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모르고 살아 가지만 모든 법은 국민에게 억울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고자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자 하여 특수교육법권안에 있다 함이 아닌 장애인이기에 특별히 교육시켜 잠재한 능력을 개발하여 인권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에 지적하고자 함보다 실수요자인 부모로써의 사례와 바램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1. 의무교육

2장 3조 1항의 특수교육진단평가 및 선정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조 진단평가하는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반 아동은 학령기가 되면 취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교장이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건 당연 합니다만 특수학교에서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아 합격하기 위하여 자기에 맞는 교육이 아닌 훈련을 하게 되어 합격하지 못하면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실사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다 해도 분기별로 떨어뜨립니다. 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학이 되는 아이는 시험에 부모의 직업이 가산점이 됩니다.(악용)

장애란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정의 파탄이 많습니다. 희망이 좌절로 바뀌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지만 아버지는 자살할 수 있어도 어머니는 자살조차 할 수 없고 생활도 아이 때문에 꾸릴 수 없도록 비참한 상태로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보다 장애아이는 우선 의무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교육 - 조기교육 - 유치원 - 국민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판별) (기술교육 영역에 따라)

6개월 초기교육(판별)을 거치어 자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 가능성을

있는 더한 장애를 주어진 안됩니다.

꼭 특수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단평가위원회

특수교육진흥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아이큐 50이하만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고 이상인 경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부모의 직업을 꼭 묻고 가난한 집 아이에겐 탈락 대상이 되는 일이 허다 합니다.

앞서 시험에 대해 이야기 한대로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치료교육이 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의사도 몇년이 걸리는 진단평가를 어떻게 하루 시험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6개월간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간난아이에겐 우유를 먹여야지 고기부터 먹이는 결과입니다.

판별위원회나 진단평가회를 학교장에 두어선 절대 안됩니다. 법을 이용하는 허구성을 계속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결정하시고 초기진단교육 6개월을 철실하게 요구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기만 해야 합니다.

이 법을 어겼을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억울한 일들이 많

아) 특수학교에 본연의 의무를 하도록 바랍니다.

3. 98조 삭제

8조에 초·중등 의무교육이 있고 1장 2조 4항·5항에 특수학급과
순회교육이 있으며 4장 12조에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순회
교육, 통합교육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시면서 98조는 당연히 삭제되
어야 합니다. 교육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 - 교육부장관 - 교육청(지방자치단체장) - 지방교육청으로 끝
내야지 학교장에게 일임하면 교육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되
므로 꼭 삭제되어야 합니다.

의무의 목적: 장애인 의무교육에 부모가 처벌을 받을까봐 의무교육
을 할 수 없다는 논리에 반박합니다.

밥을 주는 데 먹기 싫다고 거부한다 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요.

국방의무, 납세의무는 처벌대상(국민과 국가)이 되지만 장애인 의무
교육이 부모 처벌 때문에 못한다면 처벌 하더라도 해 주시고 무상교
육이 아닌 유상이라도 의무교육만이라도 해야 합니다.

결 론

의무교육: 98조 삭제, 진단평가 = 초기교육6개월후

- 1. 일반학교 일반학급
- 2. 일반학교 특수학급
- 3. 특수학교
- 4. 사회복지 시설이나 가정 방문 순회교육

취학통지서를 1.2.3.4 해당하는 곳에 받게 하셔야 합니다.

꼭 법 처벌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지켜집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이 남 전

헌법소원심판례집 제10권 제1호

헌법소원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와 같은 권리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무교육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자유권적 측면) 국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측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로 되어 있으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해석하므로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근대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의 정치참여는 전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자각과 식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그와 같은 자각과 실현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현대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교양과 직업적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능력개발은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개개인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국가가 마련할 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

교육법은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하여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특히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

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로 인한 교육시설 등의 미비로 인하여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조차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오늘날 특수교육의 실상인 것이다.

2.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및 교육관리 법규정에 관하여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법 시행령은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내에 학령대상아동의 이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동 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도 국민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동장 등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아동의 입학기일과 입학할 학교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학학령아동대상들을 파악하고 동 아동의 취학에 관한 통지를 하며(동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3조 참조), 취학아동의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취학통보 내지 전학절차를 밟은 아동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취학 내지 전학하지 않는

경우 그 아동의 성명을 그 거주지의 동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통보를 받은 동장 등은 그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으며, 감독청 역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감사하여 그 처리의 적절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96조, 제98조, 제99조 참조).

이와 아울러 교육법 제164조제1항제1호는 의무교육에 관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금 5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취학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그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소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 교육법 제98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검토

위와 같이 헌법 및 교육법은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제98조는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2조는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교육장이 결정하며,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동 결정을 받기 위

하여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취학의 면제는 불구 폐질자에 한하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차 이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동 자녀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헌법 이념에 따라 교육법 제8조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경우 의무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교육법 제98조는 헌법에서 보장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견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위 교육법 제98조는 형식적으로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보호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동 규정이 없을 경우 의무교육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될 보호자를 보호하는 규정일 뿐, 동 규정이 있다고 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을 시킬 의무와 관련하여 하등 동 의무교육을 시킬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일응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동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면 그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사실상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시설확보에 필요한 조치 확보의무를 규정한 교육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과도 배치되고, 나아가 위 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하위법인 법률으로써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사 위와 같은 위헌론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규에 의하더라도 의무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오히려 헌법 및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취학아동이 취학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아동 역시 장애의 유형 및 그 정도에 따라 교육을 시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선진제국에서 행하고 있는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등의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장애아동도 장애의 유형 및 그 정도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학령대상에 있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그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의무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4. 양 법안에 관한 법적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그 중 최소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점을 상기한다면 장애인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당위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반사적 이익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장애인 및 그 보호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들이 보호하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장애의 유형 및 그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가 되었든 특수학급이 되었든 간에 그 학교에 취학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게하여 달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정부안으로 제시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장애인 역시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점은 현재까지 장애인의 교육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가 아니라 시설 및 예산의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교육이 시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반드시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현실적으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약 20퍼센트정도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통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점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타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과 관련하여, 동 규칙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을 위하여 서울, 부산 및 도 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판별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 교육위원회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동 규칙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을 각 특수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특수학교에의 입학 및 전학이 각 특수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불허가 처분 등에 관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및 그 보호자의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의무교육을 시행할 학교 측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당해 왔었음이 현재의 특수교육의 실태라고 생각되는 바,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에서 그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기관에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동 위원회에서 진단 배치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되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특수교육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의조항으로 두어 사실상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임의조항으로 개정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동 교

육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뿐, 사실상 장애인의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해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를 의무규정 내지 강제규정으로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헌법 및 교육법상 취학아동대상 자전원에게 의무교육을 시킬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시설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립특수학교에의 지원 등과 관련된 규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임의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된다.

(5) 정부안에는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수교육의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처벌의 내용도 금고 내지 징역형의 자유형까지 규정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고용의

무를 지는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조차 장애인들을 취업시키지 않는 대신 과태료의 납부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선호하는 현실에 비추어 개정안에서도 특수교육진흥과 관련된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정부안은 오늘 날 장애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시정을 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에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이번 기회에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제시한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장애인교육에관한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사료된다.

단국대학교 교수

김 승 국

수요 10월 10일

공 공 공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의 법적 용어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각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이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부터 장애인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유엔이 '장애인 권리선언'을 결의하고(1975),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결의한(1976) 다음 해인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세계장애인의 해'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서울올림픽'과 '서울장애자올림픽'을 개최한 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1989),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1990), 이러한 것들이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서 마저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사람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차이남도 존중해 줄 때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많은 장애인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아니하였으며, 기회를 주는 경우에도 차이남을 존중해 주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모든 장애인이 각자에게 알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장애인을 경원하던 때에 '장애아동교육'이란 용어 대신 사용해진 '특수교육'을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특이한 교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반교육의 전문가나 교사들 중에도 특수교육을 자기들과는 무관한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차체에 「특수교육진흥법」의 법명도 미국의 법명(전장애아동교육법)처럼 '장애아동 교육법'으로 고쳐달라는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는 특수교육을 요하는 장애인이 학령인구 중에 약 71만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증 장애인도 있고,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도 있는데, 경증 장애인은 약 56만명이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약 15만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증 장애인 중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령의 대다수는 현재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입학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일반학교의 이해 부족으로 소외당하고 있으며, 경증 장애인 중 고등학교 학령의 대다수는 경쟁력의 부족으로 일반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106개의 특수학교와 3,321개의 특수학급에는 약 49,200명이 재학하고

있는 데, 이들 모두를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중증 장애인 중 약 2/3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을 요하는 모든 장애인이 각자에게 알맞는 교육을 받아 사회인 또는 직업인으로서 비장애인과 이웃하며 살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증 장애인을 위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그 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기준 고용 인원의 35.8% 밖에 안되며,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산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은 기준 고용 인원의 22.4%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장애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가 요구하는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경험을 가진 장애인이다.

이러한 장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놀 때에도 일반 아동과

같이 놀게 해야하며, 공부할 때에도 일반 아동과 같이 공부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깨달은 나라에서는 주류화, 사회통합, 통합교육 운동을 전개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인을 수양가정이나 그룹홈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가정으로 보내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있던 장애인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터 비로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면서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해야하며,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교사를 배치하여 일반학급에 입급되어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상교육을 맡아 하게 해야 한다. 제6차 교육과정은 일반학급에 입급되어 있는 장애아동에게 알맞게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데, 일반학교의 교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도록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행정가들이 교육과정의 조정·운영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이 포함되게 함으로써 예비 교사들도 교육과정을 장애인에게 알맞게 조정·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일반학급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장애인 모두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약 4배수가 되는 약 1,2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되 현재와 같이 국민학교와 중학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설치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장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고등학교 취학율은 95%나 되므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무교육기간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유치원의 취학율은 47.3%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장애아동이 일찍부터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이 되거나 정상이 되지 않더라도 발달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습은 곧 발달기 아동의 즐거운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터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조기교육기관을 찾아 다니게 되

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기관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그들이 찾은 기관은 어린 자녀를 보내기에는 먼거리 밖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1993년 현재도 인가를 받아 설치하고 있는 유치부는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118개 학급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장애아조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이 사설 조기교육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기관이라도 아동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설 조기교육기관이 220여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사설 조기교육기관은 기관 운영을 위해서 부모에게 교육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적지 않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장애자녀를 이러한 기관에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설 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조기교육 대상 장애 유아가 약 177,000명 있을 것으로 추산되나 조사에서는 약 4,500명만이 장애 유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장애 유아를 기지고 있는 부모 중 특수학교의 유치부에 다

니고 있는 약 900명의 부모를 제외한 약 3,600명의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동원가능한 조기 교육기관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에는 증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장애아로 쉽게 지각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모름지기 증증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일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특수학교에도 유치부를 증설해야 할 것이지만, 특수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치원과 국민학교에도 장애유아를 위한 유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서 광 용

충청부 부모부인회

응답서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사단법인 장애인 부모회를 대표하여 이시간 특수 교육 진흥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모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는 법률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법리적인 이론 전개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이 시간에 부모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특수교육법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나 라는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제6조(무상교육)

1. 특수교육기관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 교육부가 작성하여 예고한 바에 의하면 의무교육으로 되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교육으로 바꾸어 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측컨대 교육법에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에 의무교육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이나 무상교육이라는

말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더 확실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교육법이 장애인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생각하면 교육법과 특수교육법간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특수성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봅니다. 부모들은 무상교육이니 의무교육이니 하는 말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장애인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장애인을 기른다는 아픔과 교육을 시키기에 어렵다는 아픔이 함께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특수교육법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6조에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많이 발전된 내용으로서 우리 부모들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3년 7월 26일 교육부에 부모로서 건의한 내용에 장애아에 대한 교육은 영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장애아를 유아시부터 치료교육을 시키면 70-90%까지 정상인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론입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그대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에 갈 나이는 이미 늦습니다. 다른분들은 유치원 교육을 3세로 건의한 것 같으나 우리 부모들의 생각에는 1세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 역시 현재의 교육제도와 국가예산상 어려운 줄로 압니다.

지금 조기교육 시설이 무허가 사설교육기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기관을 사설기관에만 맡기는 일은 장애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법은 일반교육법에 맞추어 입법화하는 것보다 특수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들의 의견입니다.

(2) 다음은 제18조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년간 1년이

상의 전공과를 들 수 있다."라는 조문에 관한 의견에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2년 이상의 과정으로 하는 것이 교육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인도 전문기술교육을 1년에 습득할 수 없을 것인데 장애인에게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세번째로 정신지체 아동이나 중증지체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학교라는 제도 즉 소정의 년한이되면 졸업장을 주고받는 이러한 제도의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학교교육권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아동들에 대하여는 교육부와 보사부가 함께 사회복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네번째로 제4조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진단, 평가하는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모회로서는 교육부령을 정할때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에 부모가 위원의 一員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장애인을 위하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일원이 되어 부모로서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다섯번째로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7항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라는 항목에 66교재, 교구 및 생활교육연구개발과 보급"이라고 고쳐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교육은 교재, 교구로서만 교육이 되지 않고 생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을 위해 새로히 생활교육 연구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모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 교육시킬 수 없는, 반드시 부모가 함께 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외국에서는 한 아이의 교육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 상의하며 작성합니다. 이런 조문이 법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법조항에 없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에 관한 교육 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장애인 부모로서 가져야 할 정신적인 교육, 장애인에 관한 의학적인 교육, 장애인 부모로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 일반부모로서 알아야 할 사회지식을 위한 교양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부모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이 이러한 일도 학교가 해야 할 임무라고 법적으로 규정지어 주면 100% 성공적인 부모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안 제4장 3절 39조 부모교육에 관한 제안을 찬성합니다. 법적

으로는 제2조 1항에 있는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들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에 있어 "직업교육과 부모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삽입할 수 없는지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족한 내용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